

서류심사 대상자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서류제출기간은 '22년 9월 28일(수) ~ 10월 4일(화) 7일간 진행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22.09.15)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류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접수하시는 서류 외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는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회기역 두진하트리움은 별도의 주택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안내

①	당 사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자료실] → 전체 출력 * 9월 26일(월) 오픈예정
②	[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
③	체크리스트 순서에 따라서 서류 작성 ※모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사인 기입
④	서류제출 기간 내 아래의 제출방식(우편, 방문) 서류 제출

- ※ 고객님의 제출하신 서류는 당사에서 확인 즉시 우편접수에 한하여 SMS가 발송되오니 별도의 접수확인 불가합니다.
- ※ 반드시 체크리스트 순서에 따라서 서류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 제출하신 서류로 검수 진행 후 부적격 또는 미비서류, 추가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번호 기입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권장)우편 제출 방법 ※ 분양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우편제출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제출처	제출 기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281-57, 2F분양사무실	2022.09.30(금) 이전 소인분 인정

- ※ 우편 제출 시 우체국의 업무상황, 천재지변(폭우) 등으로 제출기한 내 서류접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사오니, 반드시 '22.09.30(금) 이전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도착기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제출방법

제출처	제출 기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281-57, 2F분양사무실	2022.10.04(화) 16:00 이전 제출분에 한함

- ※ 본 분양사무실은 오전 10:00부터 오후 16:00까지만 운영 되오니 반드시 16:00이전 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공통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만 25세 미만자는 제한 있음)
- 청년가구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 2자녀 이상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대상주택

구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청년가구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단,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신청시기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 단, 10년 이후 마성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 (2년 단위, 최대5회, 최장10년)
 - ※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연 0.1% 가산
 -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청년가구는 80%범위내)

< 최대한도 >

구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청년가구
수도권	1억 2천만원	2억원	2억 2천만원	7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1억 6천만원	1억 8천만원	

고객 부담 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최대 연 0.12%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인지대의 50%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 80% 범위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 100% 범위내

※ 안내장 기재면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의 필요 공사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0800,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wooribank.com)

대상가구별 금리

1. 일반 가구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 아래 우대금리 적용가능(단, ①, ② 중복적용 불가, ⑥ 적용불가)

2. 신혼 가구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5억이하	1.5억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아래 우대금리 중 ③, ④ 만 적용가능

3. 청년 가구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5%	
4천만원 이하	연 1.8%	
5천만원 이하	연 2.1%	

※ 아래 우대금리 적용가능(단, ①, ②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

-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연 1.0%
- ②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
- ③ 有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3자녀 이상(연 0.7%), 2자녀(연 0.5%), 1자녀(연 0.3%)
- ④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
- 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⑥ 청년가구 : 연 0.3%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청년가구전용 버팀목만 적용 가능)

- ※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 ※ 대출이자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 ※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지원 후 자녀 수가 증가하거나, 다문화·장애인가구에 해당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신청시 금리우대 가능(금리인하 요구권과 별개)

4.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현재)

연 1.2%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일반가구 금리 적용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마다 연장시점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청년가구는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대출은 최초 취급된 계좌의 최종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입니다

※ 상기 내용은 2022.01.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금융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금융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업,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

1억원한도 연1.2%로 지원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 지원받은 자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 +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 일반가구, 신혼가구, 청년가구는 **전용 안내장을 확인하세요.**

대출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2%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현재)
*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적용
※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대한도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 80% 범위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 100% 범위내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100%)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90%) 담보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단, 10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2년 단위, 최대 5회, 최장 10년)
- 1회만 이용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 상기 내용은 2022.01.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금융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융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민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을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내장 기재면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wooribank.com)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

- 대출금은 일시상환만 허용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허용

대출 사후관리

- 2년 이용 후 1회차 기한 연장 시 대출조건 확인
* 대출조건 미충족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보증료 최대 연 0.08%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전세금반환보증료 :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특약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0.03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필요서류

[공통]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및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제청 기종 주업종코드 확인서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주택도시보증금관련 자세한 상담은?

- ☎ 주택도시보증금 포털 <http://nhuf.molit.go.kr>
- ☎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0800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 내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소득 증빙·자산] 서류 발급 안내 도우미(1/2)

 소득 증빙 서류 안내 ※ 2021년~2022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발급해서 증빙

① 본인 소득 유무 확인	② 등본상 세대구성원 등재 확인	③ 소득기준 확인 세대원 범위 확인 후 서류 구비
본인 소득 “있음”	단독세대주(등본 상 본인만 등재)	“본인”의 세대원 구비(1인 가구 기준)
	세대원 또는 세대주(본인 외 세대원 함께 등재)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직계 존·비속) 전원” 구비
본인 소득 “없음”	무관	“부모”(본인 포함 3인가구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에 따라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가입자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 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 가입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신규취업자또는금년도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또는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동일 직급 동일호봉 인자의 전년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재직증명서를제출받아월평균소득을추정	-해당직장
	전년도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 근무처별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지않은자 (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해당)	①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세대원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필수	-해당직장
지역 가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전년도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소득금액증명이발급되지않은자/ 금년도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가입자]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산정 [국민연금미가입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금액 (매출액-매입액)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급여명세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기준소득 이하인것으로 간주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명세서 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프리랜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 증명원 (미 대상자는거주자의사업(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무직자	①비사업자확인각서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사실증명 (신고 사실 없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또는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당사 홈페이지 -세무서, 홈택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직인날인 이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제출이 필요한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기타 본 내용상에 표기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등 관련 법에 따릅니다.

[소득 증빙·자산] 서류 발급 안내 도우미(2/2)

자산 증빙 서류 안내

순서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서울시 내역]	세목 전체(전국 내역에 서울특별시가 포함 된 경우 제외 가능)	-정부 24 온라인 발급 -구청·행정복지센터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내역]	세목 전체(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과세년도 2021~2022)	-구청·행정복지센터
3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내 자산이 있는경우)	★주요 자산의 가액 확인 방법 -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출력 - 상가(서울시) : ETAX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출력 - 상가(전국) : WETAX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출력 - 토지 : 정부24 → 개별공시지가 확인 → 출력 - 자동차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출력 - 기타 : 당사 홈페이지 내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1, 2, 3 확인	-오피스텔/상가 :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첨부 -토지 : 토지대장 첨부
4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내역서	1.은행권 2.제2금융권 3.증권사 4. 보험가입정보 조회 5.대출정보 조회 1. 1~5번 전체 항목별 전체내역 1부 인쇄 2. 2각 내역별 상세 조회 화면 건별 인쇄 ※조회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화면 출력,제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당 사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작성·제출	당사 홈페이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기타 본 내용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에 따릅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하트리움(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고객관리,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
-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하트리움(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직접 입력을 통한 등록
-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은 부동산 임대를 위한 매물관리, 부동산 임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사유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일 정한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근거 :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보존 기간 : 5년
- 5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사업자(주식회사 두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위탁관리를 맡은 자, 건물시설관리위탁사 등
▷ 이용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및 당첨자 선정, 임대차 계약 및 임대관리, 임대마케팅,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입주고객서비스 등

-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본인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두진[하트리움(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귀하

[필독]

※ 상기 보증금 비율 이행 약속서는 적격/부적격/동.호수 추첨에 무관합니다.
 ※ 추후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될 시 고객님의께서 선택하신 아래의 보증금 비율대로 계약이 진행 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신청 타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 특별공급(청년 110세대) ※ 해당하는 유형·타입에 1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비율		세대수	보증금 40%		보증금 55%		보증금 70%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년	15A	110	5,400	37	7,500	27	9,500	18
확약인			(인)		(인)		(인)	

▣ 일반공급(청년 141세대)

임대보증금 비율		세대수	보증금 40%		보증금 55%		보증금 70%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년	15A	141	6,500	44	8,900	33	11,300	22
확약인			(인)		(인)		(인)	

▣ 일반공급(신혼부부 251세대)

임대보증금 비율		세대수	보증금 50%		보증금 70%		보증금 90%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신혼 부부	33B1	196	12,300	51	17,200	31	22,200	10
	33B2	34						
	32B3	10						
	33B4	11						
확약인			(인)		(인)		(인)	

상기 본인은 '회기역 두진하트리움'에 청약 신청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당첨되어 추후 동.호수를 배정받아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될 시, 본인이 선택한 보증금 비율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접수후에는 전산상의 어려움으로 변경이 불가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현황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특별공급유형	청년 []		
월평균 소득	가구총계	원	
	세대주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개월)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개월)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개월)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개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두진[하트리움(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공급]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민간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앞면)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서명 또는 인)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지원

□□□□□□ 년 □□ 월 □□ 일

금융기관장 ·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 확인 각서

신청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	
			-	
			-	
			-	

본인은 '회기역 두진하트리움'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차량등록기준 심사 요청서

서류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청 타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 차량 등록 기준

차종	운행방식	운영기준
[]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3,557만원 이내
[] 유아녀용 자동차		- 임신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557만원 이내
생업용	[]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단,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이내
	[]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 자동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별1대만 등록 가능함.

상기 본인은 '회기역 두진하트리움' 청약 및 계약, 입주시는 물론, 입주 후에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 또한 불가함을 인지하였으나, 상기 차량등록기준에 따른 차량을 보유하였음에 차량등록기준 심사를 요청합니다.

향후 심사에 따른 결과 판정 내용에 따라 차량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보유 등으로 당첨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소득 확인서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청년(대학생 포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내용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미취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사항		없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두진[하트리움(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귀하